

제4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양축하옵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와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4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24일 (수)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7층 연우홀

3. 회의 목적 사항

가. 보 고 사 항 : 영업보고, 감사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 의 사 항

제1호 의안 : 제4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연결/별도)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참조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2명) #별첨참조

제3-1호 : 사내이사 김원갑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장안석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관 선임의 건 #별첨참조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등 승인의 건

제5-1호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2호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6. 코로나19 관련 안내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해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현대중합상사(주) 대표이사 김 원 갑

#별첨자료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행	변경	비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중합상사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 1 조 (상 호) 본 회사는 "현대코퍼레이션 주식회사"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HYUNDAI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상호 변경
제 2 조 (목적사업) (88)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변경> (89) <신설> (90) <신설> (91) <신설> (92) <신설>	제 2 조 (목적사업) (88)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업 (89) 전기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90) 친환경 소재 및 복합소재 제조·판매업 (91) 수소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사업 (92)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목적사업 추가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제 2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변경> 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변경> ⑥ <신설> ⑦ <신설> 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⑥항으로 변경> ⑦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⑥항으로 변경>	제 24 조의 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결의할 수 있다. ⑥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상법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8항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3항 반영 -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반영
부칙	부칙	
<신설>	부칙 (2021. 03. 24) 본 회사의 정관의 개정은 제45기 사업연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월갑 선임의 건, 제3-2호 : 사내이사 장안석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김월갑	1952.10.25	사내이사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장안석	1961.11.13	사내이사	최대주주의 임원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연도	직책	
김월갑	현대중합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2005-2015	현대하이스코 부회장	없음
		2015-2016	현대하이스코 고문	
		2016-현재	현대중합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장안석	현대중합상사 사장	2010-2015	현대중합상사 경영기획실장/금융여신담당중역	없음
		2015-2020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2020-현재	현대중합상사 사장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최관 선임의 건]

- 후보자 성명/생년월일/사외이사 여부/최대주주와의 관계/추천인/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임원 재직 여부/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등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임원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최관	1957.12.06	사외이사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후보자 주된 직업/세부 경력/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등

성명	주된 직업	주요 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연도	직책	
최관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1999-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없음
		2013-2014	한국회계학회 회장	
		2018-현재	현대중합상사 사외이사	